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 · 문의 · 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 대상여부?

도로건설 사업으로 과거 사전환경성검토(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협의 완료되어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후 주민의견 수렴까지 진행되었으며, 주민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계획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 ①항 1호」에서는 당초 협의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노선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대비하여 30% 이상의 규모(면적기준) 증가가 예상되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단계까지 진행되었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또한, 환경영향평가 기협의한 사업 중 전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어느 평가단계서부터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A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 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 이상 증가(「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도시 · 군 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면적이 30% 이상이더라도 증가하는 부분이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에서 6만㎡, 그 외 지역(녹지지역 포함)에서 1만㎡ 미만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이행한 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Q2 대기오염배출시설 해당유무는?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입자상 물질의 저장시설 중 용적이 50 세제곱 이상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개의 저장시설 합계가 50 세제곱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건지? 한개의 저장시설 용량이 50 세제곱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상 배출시설 관련 질의 내용입니다. 용적이 1㎥ 이상인 도금, 탈지시설등의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 용적 1㎥ 이상의 도금, 탈지시설이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고 있는데 용적이 1㎥ 이하인 도금, 탈지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게 된다면 대기배출시설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A **(답변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1항 가목에서는 개별시설규모가 나목에 의한 배출시설 기준이상인 경우, 해당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며, 같은 사업장 내에 기준미만인 동종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시설들의 규모를 합산했을 때 나목에 의한 배출시설 기준이상인 경우 해당 시설들 전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답변2) 제시된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시

설의 설치로 인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해당시설은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되며, 같은 사업장 내의 기존 동종시설 중 기준미만이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된 경우, 문의대상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동종시설간 규모의 합산이 대기배출시설 기준이상이 되는 경우로서 기존 동종방지시설과 배출구를 달리할 경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신규허가(신고)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환경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3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정처분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9조를 보면,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같은 법 규칙별표22 행정처분기준 을 보면, 표 첫번째 1)에 '방지시설의 결함, 고장, 운전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3차는 개선명령, 4차는 조업정지 10일입니다. 만약 운전미숙 등으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될 경우 법 39조에 따라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10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39조 관련 벌금이나 과태료는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경우 38조 1항 4호 '그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지요?

A

1. 방시설의 결함 · 고장 또는 운전 미숙 등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2의 2호 가목 표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행정처분
- 법 제32조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1차~3차 : 개선명령, 4차 : 조업정지 10일)
- 법 제32조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1차~2차 : 개선명령, 3차 : 조업정지 10일, 4차 : 조업정지 20일)

2) 초과배출부과금 : 산정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참조

2.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2의 2호 가목 표의 6) 바)〕에 해당하는 경우}

1) 행정처분
- 1차 : 조업정지 10일, 2차 : 조업정지 30일, 3차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초과배출부과금 : 산정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참조
3)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6조)

Q4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은?

201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화관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법 제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있어서
1. 법에서 규정하는 점검대상인 취급시설에 다음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1)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발생되는 폐수 드레인 배관
2) 화학물질 사용 시 발생되는 대기 Exhaust 배관
※ 당사의 경우 반도체 업종으로서 제품 식각 등에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음.

2. 화관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 취급시설도 점검 대상인지요?

A

(답변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안)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상태(파손, 노후화, 부식, 밀폐여부 등), 계기상태, 안전장구 등을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이 직접적으로 보관·저장 및 이송·운반하는 과정에 있지 아니한 시설·장비는 자체점검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답변2)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만 자체점검대상에 해당 됩니다.